

2023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

재단
법인 신안군장학재단

2023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

I. 사업목표

도서낙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놓여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도서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감이 낮아져 관내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타 지역 학교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군민들의 교육적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II. 중점지원 사항

-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장학사업
- 성인을 위한 배움의 기회 지원 장학사업
- 위기가정을 위한 장학사업

III. 장학생 선발 개요

1. 기본자격 및 지원 제외

가. 기본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

※23년 하반기부터 대학생 또한 관내에 주소 두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나.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안내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는 장학금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포함
 - ※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등 등록금 지원목적과 무관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함
- 이중지원 해소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대출금 수혜 불가
 - ※ 다음 학기 대출 및 장학금 심사 기간까지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함

2.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이사회 심의

나. 해당 기관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

3. 소요예산 : 179,400천원

4. 지원규모 및 분야별 배정 인원

가. 1인당 지원 기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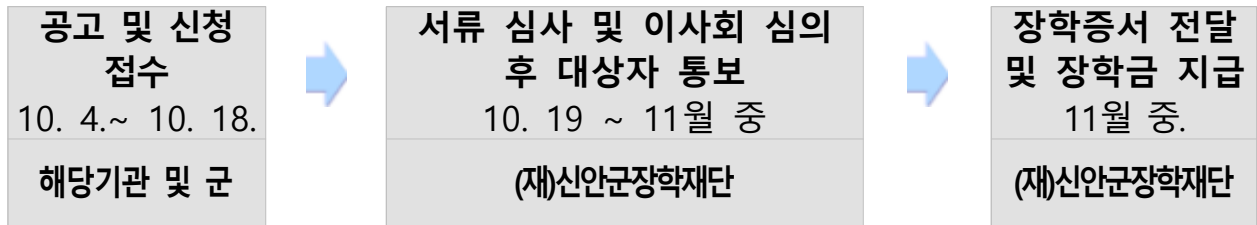
- 초등학생 : 300천원 - 중 학 생 : 500천원
- 고등학생 : 700천원 - 대 학 생 : 3,000천원(1,500천원)

나. 분야별 지원 규모

(단위 : 명, 천원)

분야	구 분	지원대상 (선발기준)	추천권자	하반기	
				인원	금액
	합 계				179,400
성 적 우 수	우 수 장 학 금	대학생 (성적평가 100%)	재단	00	100,000
	내 고 장 학 교 진 학 장 학 금	중/고등학생 (성적평가 100%)	학교장	36	20,400
교 복 육 지	일 반 장 학 금	초/중/고/대학생 (소득평가 100%)	재단	00	34,000
	만 장 학 도 학 학 금	초등학생 (출석률 100%)	학교장	15	4,500
	다 문 화 가 정 장 학 학 금	초/중/고/대학생 (소득 100%)	재단	00	8,000
	낙 도 학 생 장 학 금 (신 설)	초/중/고 (소득 100%)	재단	15	7,500
	위 기 가 정 진 급 지 원 금	초/중/고/대학생	재단	00	5,000

5. 지원절차 및 일정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6. 분야별 주요 내용

가. 성적우수

1) 우수 장학 사업

- 접 수 처 :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대학생
- 지원규모 : 00명, 100,000천원(1인당 최대 3,000천원)
 - 신입생 : 전문대생 및 대학생 : 00명, 30,000천원
 - 재학생 : 전문대생 및 대학생 : 00명, 70,000천원
- 신청요건

구 분	신 청 요 건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 과목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평가에서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 4.5만점 2.0점 - 4.3만점 1.8점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전에 다녔던 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 선발기준 : 성적 평가 100%

2) 내고장 학교 진학 우수 장학 사업

- 접 수 처 : 해당학교
- 신청대상 :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원규모 : 36명, 20,400천원
 - 중 학 생 : 24명, 12,000천원
 - 고등학생 : 12명, 8,400천원

○ 학교별 배정인원 ※ 배정 인원 미충원 시 타학교 인원 배정

중학교	계	지명중	압해중	증도중	임자중	자은중	비금중	흑산중	하의중	신의중	장산중	안좌중	암태중
	24	2	2	2	2	2	2	2	2	2	2	2	2
고등학교	계	지명고		신안해양과학고		임자고		도초고		하의고		안좌고	
	12	2		2		2		2		2		2	

○ 신청요건

구 분	신 청 요 건
중 학 생	-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 - 2023년도 관내 중학교 신입생(1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고등학생	- 관내 중학교를 졸업 - 2023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1학년)으로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성적평가 100%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후 재단 심사(기관 자체 심사규정에 의거 선발 추천)

나. 교육복지

1) 일반(저소득)장학 사업

- 접 수 처 :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초·중·고·대학생
- 지원규모 : 00명, 34,000천원
 - 초등학생 : 15명, 4,500천원 / 중학생 : 15명, 7,500천원
 - 고등학생 : 10명, 7,000천원 / 대학생 : 10명, 15,000천원
- 신청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 가정의 자녀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의 자녀
 - 의사상자의 자녀
 - 시설입소자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 조손가정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선발기준 : 소득 평가 100% 적용(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
- ※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으로 이중수혜 가능
- ※ 생계비 이중지원 대상이므로 최고 지원 가능액: 150만원

2) 만학도 장학 사업

- 접 수 처 : 해당학교
- 신청대상 : 만 35세 이상 초등학생
- 지원규모 : 대상자, 4,500천원(하반기)
 - 초등학생 : 15명 4,500천원
- 신청요건
 - 신안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
 - 만 35세 이상 군민으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만학도
 - ※ 단, 하반기 1회 장학금 지급하며, 선발인원은 예산범위내 탄력운영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후 재단 심사(기관 자체 심사규정에 의거 선발 추천)
- 선발기준 : 출석률 100%

3) 다문화가정 장학 사업

- 접 수 처 :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초·중·고·대학생
- 지원규모 : 20명, 8,000천원(선발인원은 예산범위내 탄력 운영)
- 신청요건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선정기준 : 소득 평가 100% 적용(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

4) 낙도 학생 장학 사업 [2023년 신설]

- 접 수 처 :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생
- 지원규모 : 15명, 75,000천원
 - 초등학생 : 5명, 1,500천원 / 중학생 : 5명, 2,500천원
 - 고등학생 : 5명, 3,500천원
- 신청요건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정의하고 있는 ‘낙도’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자녀
 - 신안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선발기준 : 소득 평가 100% 적용(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우선 선정)

5)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

○ 지원기간 : '23년 5월~12월(수시 접수)

○ 지원규모 : 대상자, 10,000천원(선발인원은 예산범위내 탄력 운영)

○ 신청요건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

○ 선발기준 : 군에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으로 확인한 가정에 한해 지원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군 사회복지부서 확정 공문 등) 제출

○ 지급시기 : 이사장 결정 후 수시로 지급

※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으로 이중수혜 가능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평가방법

1) 성적평가

(1) 대학 재학생 성적 산출 방법

-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4.0, 4.3, 4.5)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
- 만점 성적 환산표(서울대학교 만점 성적 환산표 활용)

환산점수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100	4.50	4.30	4.00
98	4.49 ~ 4.40	4.29 ~ 4.20	3.99 ~ 3.90
97	4.39 ~ 4.30	4.19 ~ 4.10	3.89 ~ 3.80
96	4.29 ~ 4.20	4.09 ~ 4.00	3.79 ~ 3.70
95	4.19 ~ 4.10	3.99 ~ 3.90	3.69 ~ 3.60
94	4.09 ~ 4.00	3.89 ~ 3.80	3.59 ~ 3.50
93	3.99 ~ 3.90	3.79 ~ 3.70	3.49 ~ 3.40
92	3.89 ~ 3.80	3.69 ~ 3.60	3.39 ~ 3.30
91	3.79 ~ 3.70	3.59 ~ 3.50	3.29 ~ 3.20
90	3.69 ~ 3.60	3.49 ~ 3.40	3.19 ~ 3.10
89	3.59 ~ 3.50	3.39 ~ 3.30	3.09 ~ 3.00
88	3.49 ~ 3.40	3.29 ~ 3.20	2.99 ~ 2.90
87	3.39 ~ 3.30	3.19 ~ 3.10	2.89 ~ 2.80
86	3.29 ~ 3.20	3.09 ~ 3.00	2.79 ~ 2.70
85	3.19 ~ 3.10	2.99 ~ 2.90	2.69 ~ 2.60
84	3.09 ~ 3.00	2.89 ~ 2.80	2.59 ~ 2.50
83	2.99 ~ 2.90	2.79 ~ 2.70	2.49 ~ 2.40
82	2.89 ~ 2.80	2.69 ~ 2.60	2.39 ~ 2.30
81	2.79 ~ 2.70	2.59 ~ 2.50	2.29 ~ 2.20
80	2.69 ~ 2.60	2.49 ~ 2.40	2.19 ~ 2.10
79	2.59 ~ 2.50	2.39 ~ 2.30	2.09 ~ 2.00
78	2.49 ~ 2.40	2.29 ~ 2.20	1.99 ~ 1.90
77	2.39 ~ 2.30	2.19 ~ 2.10	1.89 ~ 1.80
76	2.29 ~ 2.20	2.09 ~ 2.00	1.79 ~ 1.70
75	2.19 ~ 2.10	1.99 ~ 1.90	1.69 ~ 1.60
74	2.09 ~ 2.00	1.89 ~ 1.80	1.59 ~ 1.50
73	1.99 ~ 1.90	1.79 ~ 1.70	1.49 ~ 1.40

(2)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과목별 원점수 × 과목 수

※ 예체능 과목 및 교과(군)의 과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예체능 과목 및 이수과목(성취도 “P”)은 평가에서 제외

○ 성적산출 예시

교과	과목	1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I	2	91 / 77.3(16.0)	A(27)	3
수학	수학I	2	97 / 77.2(18.0)	A(27)	2
영어	실용영어I	2	92 / 67.5(19.9)	A(27)	2
사회	한국사	3	84 / 70.9(18.7)	B(27)	4
체육	체육	2	96 90.7(-7.5)	A(27)	
예술(음악/미술)	음악	2	92 86.4(-7.7)	A(27)	
제2외국어	일본어I	3	95 / 78.3(15.4)	A(27)	2
공업에관한교과	공업일반	2	87 / 74.4(15.8)	B(27)	
공업에관한교과	기계일반	2	87 / 68.4(19.8)	B(27)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Rightarrow 2 \times 91 + 2 \times 97 + 2 \times 92 + 3 \times 84 + 3 \times 95 + 2 \times 87 + 2 \times 87 = 1,445$$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16

$$\Rightarrow 2 + 2 + 2 + 3 + 3 + 2 + 2 = 16$$

◆ 환산점수 : $1,445 \div 16 = 90.3$

2) 소득평가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적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1) 가구원 수 산정

- (미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학생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 또는 모, 형제자매는 제외
- (기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또는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제외) 가구원이 해당 학생(부·모 및 배우자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 해당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2) 건강보험료 조사

-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3개월 평균하여 산출
 -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건강보험료 조사 대상자 및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조사 대상자	제출서류(소득증명자료)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주거를 달리하는 가구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부모, 학생 모두 포함된 것)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조사 미 실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정(보험료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부모, 기혼자 부부)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기타 건강보험료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지역/직장/혼합보험료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로 평가

○ 가구원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모두 지역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모두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4) 소득 산출 방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를 참고하여 소득액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로 평가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및 가입자 자격을 고려하여 소득액 산정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100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보장시설)	98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96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94점
• 차상위계층	92점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90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65% 미만	88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65% 이상 ~ 70% 미만	86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70% 이상 ~ 75% 미만	84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75% 이상 ~ 80% 미만	82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80% 이상 ~ 85% 미만	80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85% 이상 ~ 90% 미만	78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5% 증가시마다 2점씩 감소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역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38,475	72,263	105,944	126,629	147,855	171,468	196,236	223,186
80%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264,991	293,801
90%	50,654	98,703	128,505	164,211	201,458	235,637	273,699	305,817	335,569
100%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305,817	354,030	402,840
110%	89,972	128,505	175,189	223,186	264,991	305,817	354,030	402,840	436,179
120%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481,248
130%	122,890	167,633	223,186	273,699	335,569	375,956	436,179	481,248	527,523
140%	128,505	187,378	249,281	305,817	354,030	402,840	481,248	527,523	570,140
150%	142,142	206,359	273,699	335,569	402,840	436,179	527,523	570,140	628,210
160%	157,523	229,312	293,801	354,030	436,179	481,248	527,523	570,140	628,210
170%	171,468	249,281	319,686	402,840	481,248	527,523	570,140	628,210	717,192
180%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527,523	628,210	717,192	717,192

○ 직장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102,790	125,074	147,280	166,996	189,109	209,382	230,142	250,789
80%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30,142	255,791	284,769	309,670
90%	110,461	141,601	173,332	203,267	233,952	261,015	291,898	320,126	346,067
100%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320,126	359,887	403,785
110%	135,693	173,332	212,442	250,789	284,769	320,126	359,887	403,785	434,962
1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476,875
130%	159,423	206,304	250,789	291,898	346,067	379,133	434,962	476,875	521,613
140%	173,332	222,624	272,226	320,126	359,887	403,785	476,875	521,613	563,270
150%	183,861	237,913	291,898	346,067	403,785	434,962	521,613	563,270	625,329
160%	197,299	255,791	309,670	359,887	434,962	476,875	521,613	563,270	625,329
170%	209,382	272,226	332,208	403,785	476,875	521,613	563,270	625,329	729,187
180%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521,613	625,329	729,187	729,187

○ 혼합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103,263	126,502	148,789	169,107	191,845	212,442	233,952	255,791
80%	99,340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291,898	320,126
90%	111,677	142,342	175,359	206,304	237,913	266,386	299,947	332,208	359,887
100%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332,208	379,133	434,962
110%	137,254	175,359	215,567	255,791	291,898	332,208	379,133	434,962	476,875
120%	148,789	191,845	233,952	278,492	320,126	359,887	434,962	476,875	521,613
130%	161,135	209,382	255,791	299,947	359,887	403,785	476,875	521,613	563,270
140%	175,359	226,361	278,492	332,208	379,133	434,962	521,613	563,270	625,329
150%	186,476	242,216	299,947	359,887	434,962	476,875	563,270	625,329	729,187
160%	200,343	261,015	320,126	379,133	476,875	521,613	563,270	625,329	729,187
170%	212,442	278,492	346,067	434,962	521,613	563,270	625,329	729,187	934,511
180%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563,270	729,187	934,511	934,511

※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 중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23년)' 편집

3) 우선순위 결정 기준

(1) 저소득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많은 순)

(수급자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순)

○ 2순위 차상위계층(소득기준 적은 순)

○ 3순위 소득평가 순(점수 높은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 수 > 고학년

(2) 대학생 성적우수 : 성적 > 취득학점 > 고학년

4) 기타

- 기관별 자체 심사에 있어서 재단 선정기준 외에 객관성이 확보된 자체 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 심사 가능

IV. 행정사항[관계기관 협조사항]

1. 반상회보, 유선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수혜 대상자 누락방지(붙임 공고안 참조)
2. 관계서류 확인 철저히 결격자가 지원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 방지
3.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신안군장학재단에 제출 시 원본 제출
4.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23. 10. 20(금)까지 제출

※ 각 해당기관은 자체 심사를 거쳐 ‘23. 10. 20.(금)까지 모든 서류가 도착하도록 협조

V. 추진일정

- | | | |
|----------------------------|---|-----------------------|
| 1. 지원계획 시달(읍·면사무소, 학교) | : | ‘23. 9. 26. 까지 |
| 2. 공고 및 신청서 접수(읍·면사무소, 학교) | : | ‘23. 10. 4. ~ 10. 18. |
| 3.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 : | ‘23. 10. 19. ~ 11월 중 |
| 4.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 : | ‘23. 11월 중 |

붙 임 1.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자 구비서류 1부.

2. 장학금 신청서 1부.

3. 신청인 서약서 1부.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 1

장학금 신청자 구비서류

구 분	추 천 자	구 비 서 류
공 통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우수장학생	해 당 없 음	· 공통(① ~ ⑦) ·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내고정학교진학 우수장학생	학 교 장	· 공통(① ~ ⑦) · 추가 : 관내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 추가 : 붙임5 신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약정서
일반(저소득) 장 학 생	해 당 없 음	· 공통(① ~ ⑦)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만 학 도 장 학 금	학 교 장	· 공통(① ~ ⑦) · 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다문화가정 장 학 생	해 당 없 음	· 공통(① ~ ⑦)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낙 도 학 생 장 학 금	해 당 없 음	· 공통(① ~ ⑦)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위 기 가 정 긴 급 지 원	읍 · 면 장	· 공통(① ~ ⑦)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어가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학 교 장	· 공통(① ~ ⑦) · 추가 : 어업면허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 저소득 자녀의 경우 저소득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

[illegible]

※ 행정기관 확인사항 란에 있어 반드시 담당자 확인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함.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본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동안 이중지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지원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3년 동안 장학금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및 반환금
장학금 종류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I・II 유형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에 따른 반환금	■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
이중지원의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제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재]신안군장학재단 귀중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재)신안군장학재단(이하 ‘재단’)이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 · 이용목적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금 지원 등
- 중복 수혜여부 확인을 위한 타 지원기관 정보 제공
- 모금 활동을 위한 정보 활용

2) 수집 · 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교, 전화번호, 직업등에 관한 사항 등

3) 보유 ·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문서보존기한)까지입니다.

4)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장학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1) 대상기관 : 공공기관, 기타 장학금 지원 기관

2) 목적 : 장학금 지원에 따른 이중수혜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23년 월 일

부 성명 : 서명 또는 (인)
 모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재)신안군장학재단 귀중

붙임 5
신청인 서약서

신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약정서

학 교		학 년		성 명	
목 적	2023년新安군 관내 ☐ ()중학교 입학 ☐ ()고등학교 입학				

위 본인은新安군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내고장 학교 진학 우수 장학사업」 부문에 지원을 희망하고 2023년新安군 관내 중 또는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였으며 최소 1년 이상 재학할 것을 약정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부모)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학생과의 관계 :

신 안 군 수 귀하

※ 동의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 및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함.